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2.3.] [법률 제13144호, 2015.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8, 23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육경비"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육경비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8.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3144호, 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2.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2.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8, 2339

제5조(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하가축이 폐사한 경우
2. 출하가축이 훼손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축이 폐사한 경우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 살처분·소각·매몰 등으로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출하할 수 없게 된 경우
3. 출하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이 훼손되거나 계약농가에 공급한 가축에 비하여 그 출하량이 감소한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계열화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육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의 공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2.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품질을 속이거나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계약농가가 사육과정에서 사육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변경된 계약내용을 계약농가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⑤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가축의 사육, 사육자재의 품질 또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거짓으로 통보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부칙 <제136호, 2015.2.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8, 2339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5919호, 2014.12.30.> (규제 개선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0분의 100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의 90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00	200	400
2)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3)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0	1,000	2,000
4) 계열화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500	1,000	2,000

나.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및 계약농가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2항	30	60	120
2)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0	120	240
3)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	300	600
4)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계약농가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300	600

별지 제2호서식**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 정보**

제 호

공급 새끼가축 관련 정보

종축장명		소재지	
종축 품종 (계통 또는 계종)			
일령			
백신 현황			
공급 부화장		소재지	
새끼가축 또는 종란생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새끼가축 공급처가 2이상일 경우 각각 모두 표시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3.11.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 2013.11.29,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339

1.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가. 사료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2>
-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료 공급처 또는 사료성분이 변경될 경우 계약농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이미 분석된 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새끼가축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부화장, 해당 새끼가축·종란을 생산하는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종암장 등)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새끼가축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관절이 정상이 아닌 것
 - 부리가 오염되어 있고 붉은 반점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을 띠고 있지 않은 것 (가금류)
 - 배꼽 주위 난각막 잔유물 및 잔존 난황이 있는 것(가금류)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모넬라, 난개대 질병 등이 있는 것(가금류)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구제역 등 질병 등이 있는 것(돼지)
-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가금류)
- 계열화사업자는 새끼가축 운송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한다. (가금류)

* 유해성 세균 :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및 *E. coli O157:H7* 등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

- 출하 전 및 출하 시 날개(가금류)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출하되는 가축은 가슴, 배, 등 및 옆구리 부위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멍 또는 창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출하 시 비정상적(목이 비틀어져 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한 것을 모두 포함)인 상태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사육시설

- 계약농수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단열시설 :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폼,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여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급수시설 :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 무창시설은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다.

- 무창시설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펜의 크기·수량·위치는 축사크기에 따라 공기를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방축사는 폐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농가 사정에 따라 자연환기시설도 인정할 수 있다).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별표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나. 소독 및 방역시설
- 소독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